

#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

"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행위금지 고시(2020.2.5.~4.30)"가 시행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한 자는 “2년 2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”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.

\*매점매석 기준 :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

## <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>

\*\*식품의약품안전처 : 02-2640-5057 / 02-2640-5080 / 02-2640-5087

\*\*인천시 일자리경제과 : 032-440-4204